

## ■ 주요 업무 사례 ■

### 택시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해 진정한 폐업임을 인정받은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461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등 취소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4637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갑 회사는 A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A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입사서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 소속의 특정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입사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갑 회사는 A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갑 회사는 그 사이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을 결의하였고 영업용 택시 전부를 을, 병, B, C 회사에 분할하여 매각한 뒤 폐업하였습니다. 그 후 중노위는 갑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제1재심판정')을 하였고, 지노위는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합계 9억 1,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또다시 "갑 회사의 폐업은 위장폐업으로서 지배·개입 내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갑 회사와 을, 병, B, C 회사가 체결한 택시매매계약은 영업양도이므로 을, 병, B, C 회사가 자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갑 회사의 폐업은 위장폐업이라고 하였으나, 다만 을, 병 회사만 갑 회사와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갑, 을, 병 회사에 대해서만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이하 '제2재심판정').

지평 노동팀은 1심부터 갑 회사를 대리하여 제1재심판정과 4번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갑, 을, 병 회사를 대리하여 제2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재심판정에 관해서는 '재심판정 당시 갑 회사가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판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들 역시 위법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재심판정에 관해서는 “갑 회사의 폐업은 위장폐업이 아니라 진정한 폐업이고, 을, 병 회사는 갑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택시 및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만을 양수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이 갑, 을, 병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제1재심판정과 4번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제2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와 참가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권영환 변호사